

Fi 하이브리드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소법"이라 한다)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**.

구 분		내 용		
상품명		• Fi 하이브리드 정기예금		
가입대상		•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		
가입기간		• 12개월		
가입금액		• 10만원 이상		
가입채널		• 대면(영업점), 비대면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(다올디지털뱅크Fi(파이), SB톡톡*))		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일시지급식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
제한 사항	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
이자율 (26.07.08 현재)	기본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적용 • 하루만 맡겨도 기본금리가 적용되며, 만기해지 시에는 추가금리가 자동으로 더해집니다. (예시) 대 면 기준 : 중도해지이율 2.60%, 만기해지이율 4.10% 비대면 기준 : 중도해지이율 2.60%, 만기해지이율 4.10%		
		[연, 세전]		
		약정이율(연평균수익률)	대면	비대면
		① 기본금리 (중도해지 시 적용)	2.60%(2.63%)	2.60%(2.63%)
		② 추가금리 (만기해지 시 추가)	1.50%	1.50%
①+② 만기해지 적용금리	4.10%(4.17%)	4.10%(4.17%)		
	만기 후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		
		경과기간	이 율	
		1개월 이내	당초 기본금리와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기본금리 중 낮은 금리	
		1개월 초과	연0.1%	
중도해지이율		• 기본금리와 동일		
만기이자 계산방법		구 분 이자 계산식 월 단위 복리식원금×{(1+이율/12)ⁿ-1} (n은 경과월수)		
원천징수	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	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	•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		

구 분	내 용
위법계약 해지권	- 금융회사가 금소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)
자료열람 요구권	-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-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	비대면 계좌개설 후, 약정금리 조회 시 '기본금리'로 표기. (만기해지 시에는 추가금리가 자동으로 더해지오니 유의바랍니다.)
세제혜택	-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- 가입한도 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 -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분할해지	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
만기해지 사전신청	- 자동해지 -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 - 자동재연장 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신청은 불가합니다.
연계·제휴 서비스	☒ 해당사항 없음 ☐ 해당사항 있음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**중도해지하는 경우**, 가입기간에 따라 **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**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

☐ 예 ☐ 아니오  “중도해지이율”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

② 본인은 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**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**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**합니다.

년 월 일 예금주: 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